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IV)

## - 사법관할권 관련 쟁점 -

정 원 준\*

### 1. 개 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 중 하나로 클라우드 관련 분쟁 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국가에서 사법관할권<sup>1)</sup>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할권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적 법률관계에서는 통상 단일 국가의 관할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합적 재판관할권(속주주의·속인주의·효과이론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을 인정해왔다.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일종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와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며, 특별히 별도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연구원, (043)531-4009, visix@kisdi.re.kr

\*\* 본고는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 ② 저작권 관련 쟁점, ③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관련 쟁점, ④ 사법관할권 관련 쟁점, ⑤ 클라우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이라는 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논의의 네 번째 게재 글임을 밝혀둔다.

1) 국가관할권은 구체적인 작용을 중심으로 ‘입법관할권’, ‘집행관할권’, ‘재판관할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본고에서는 사법부 혹은 행정심판기관이 국내 법령을 적용하여 심리하는 ‘재판관할권’과 행정기관 및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집행관할권’을 총칭하는 ‘사법관할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규범적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영업소 소재지, 재산소재지, 의무의행지, 침해행위지, 결과발생지, 법익보유지 등 다양한 연결점을 갖게 되므로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 문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 사법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관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 2.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법관할권 쟁점의 고찰

### (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관할권 논의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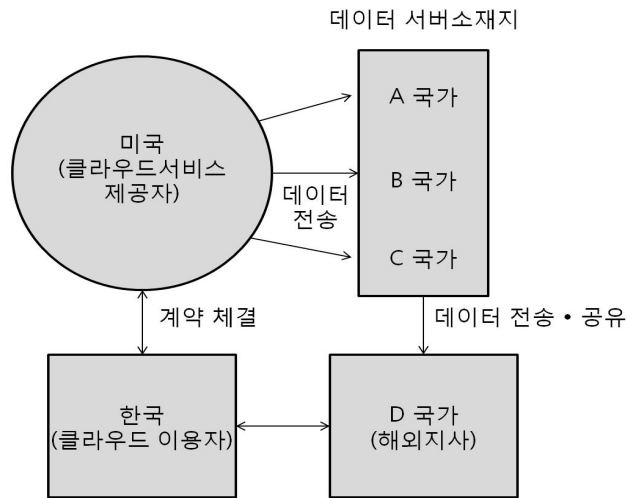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는 없고 얼마든지 이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속지주의의 규제 틀을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환경에서 물리적 공간개념이 무의미해졌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기업들은 개별국가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론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타국의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국가에 분산하여 임의의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들은 가상화된 공간에 말 그대로 구름(Cloud)과 같이 유동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관할권 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2) 클라우드 산업에서 Google, Amazon, Microsoft,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가중시키고 있다.

## (2) 클라우드 서비스계약상 재판관할권의 인정여부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할지는 소송상 피고의 주소지 혹은 영업소 소재지이지만,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국제계약 관계를 가정함으로써 해당 사례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연결점들의 관할 인정 여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다.<sup>4)</sup>

[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계약 관계 예시



3)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여기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오병철(2013)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그림 1]에서와 같이 클라우드 이용자인 한국 기업이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서비스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해 데이터를 A·B·C 국가의 서버에 분산·저장하였고, 이를 한국 본사 뿐 만 아니라 D국가에 설립된 해외지사에서도 해당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클라우드사업자가 한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영업소 소재지’로서 어렵지 않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sup>5)</sup> 또한 ‘의무이행지’는 클라우드 접속에 합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사가 있는 한국 뿐 만 아니라 D국가에 있는 해외지사도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재산소재지’는 유형적 재산인 서버 소재지와 무형적 재산인 데이터 저장지가 있으나, 클라우드의 분산구조상 이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지’로서 불법행위를 위해 접속이 이뤄진 장소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결과발생지’로 볼 수 있다.<sup>6)</sup>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관할지로 ‘법익보유지’가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법익이 인정되는 국가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해외지사가 있는 D국가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나 제3국의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국가들은 법익보유지로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3) 집행관할권의 인정여부

집행관할권은 사법부의 판결집행 또는 행정기관의 행정적 규제 등 집행권 행사와 관계된 것으로, 개별국가 고유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역외적용하는 것

5) 민사소송법 제12조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특별재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침해행위자와 결과발생지 모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집행관할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범죄의 경우 범죄인 인도협정을 마련한 것처럼 국제적인 협력과 인식을 통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물리적인 진입 없이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수색 또는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집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우는 견해<sup>7)</sup>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결 어

관할권 혼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론적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 실체법의 정비를 통해 국제적 규율 정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영국, 2006). 물론 개별국가에서의 입법조치는 국가 경제에 있어 해당 산업의 비중이나, 자국 산업 구조상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속지개념이 다양한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교법적인 현황을 반영한 입법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 협력을 토대로 관할권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 법률관계는 정책적 방침 혹은 외교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서 정책적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 간 조율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법집행과 관련한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국내법 적용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더욱 많은 글로벌 기반의 ICT 서비스들이 출시되면, 사법관할권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원칙 마련을 통해 사전적

7) 오병철(2013), 110면 참조.

으로 대응하는 것이 클라우드와 같은 신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통과를 기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법익침해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국 (2006),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관할권 문제의 해결방안”, 《외법논집》, 제23집, 2006. 8.
- 오병철 (2013),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사법관할권”, 《IT와 法연구》, 제7집, 2013. 2.